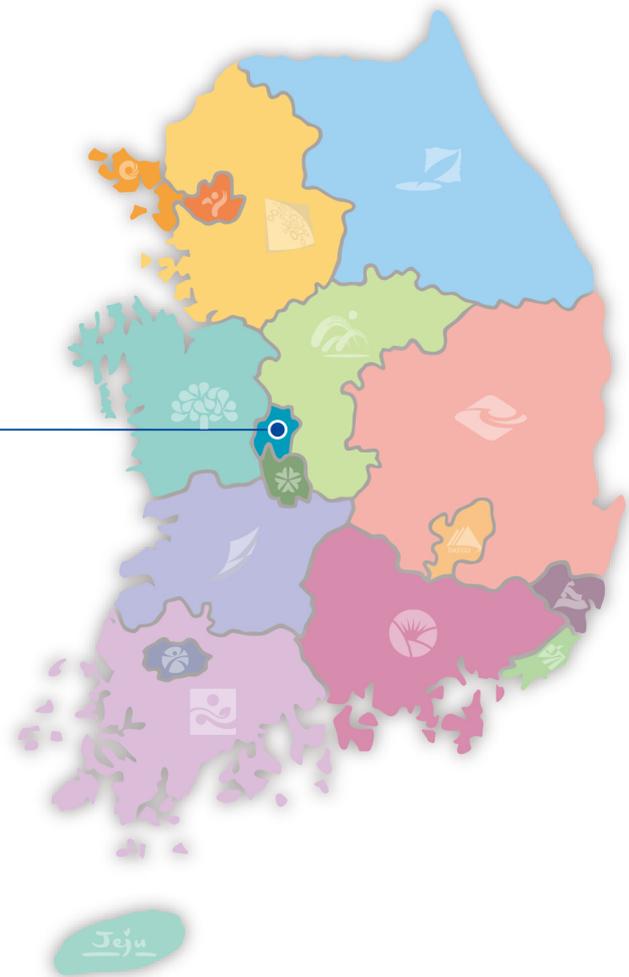


# Policy ISSUE REPORT

## 주민주도형 주민자치(위원)회 운영 활성화 -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 정립 -

김필두 연구위원 최인수 연구위원





## **I. 서론**
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
3. 연구 분석의 기본 틀

## **II. 주민자치 관련 이론적 논의**

1. 주민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회의 필요성
2.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

## **III.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**

1. 조사설계
2.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분석 및 시사점

## **IV.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정립방안**

1. 기본방향
  2.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정립방안
-

## I. 서론

### 1 연구의 배경과 목적

#### ※ 과업지시서 요청사항

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(위원회)의 역할과 지위 기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

- ✔ **국민 개개인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 목표에 대응**
  -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전환
    -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→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
    - 직접 민주주의 →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
    - 일상의 민주주의 →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
    - 과정의 민주주의 →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
    - 풀뿌리 민주주의 → 자치분권과 생활 정치, 주민자치
  -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
    -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·재정 정보공개 확대
    - 주민 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
    -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·지위 강화
    - 읍·면·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
- ✔ **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모델 구상**
  -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부합되는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
    - 세종시에 적합한 주민자치회의 조직 설계

-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사업의 추진 방향 모색
-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
  - 주민자치위원의 위상 재정립
  -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방안 모색
  -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역할분담 방안 모색

## 2 연구의 범위와 방법

### 1) 연구범위

#### ✓ 시간적 범위

- 연구가 시작된 2017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되
- 2016년도 세종시 주민자치(위원)회 현황과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

#### ✓ 내용적 범위

- 세종시 주민자치(위원)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
  -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역할분담
  - 주민자치(위원)회 조직기구,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
  - 주민자치위원의 의식과 자치역량 실태와 문제점
- 주민 주도의 세종형 주민자치(위원)회 모델의 제시
  - 바람직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역할분담과 권한배분
  - 주민자치회 조직기구 재설계
  -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
  - 주민자치위원의 의식과 자치역량 함양 방안

### ✓ 대상적 범위

- 세종시 16개 주민자치위원회 중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집중 분석
- 조사대상은 주민자치위원과 관련 공무원, 전문가
  - 공무원: 세종시 관련 부서,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
  - 주민자치위원회: 위원장, 부위원장, 분과위원장, 간사
  - 전문가: 주민자치 관련 학자, 연구자, 현장활동가

## 2) 연구방법

### ✓ 문헌연구

- 주민자치 관련 이론과 실태 분석
  - 주민자치 관련 정부의 정책자료와 관련 법제도, 보고서, 행정자치부의 정책지침 등을 분석
  - 국내외 관련 보고서, 연구논문 등 분석
-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법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
  - 조사대상 주민자치회 관련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분석
  - 주민자치회의 조직,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등 운영 현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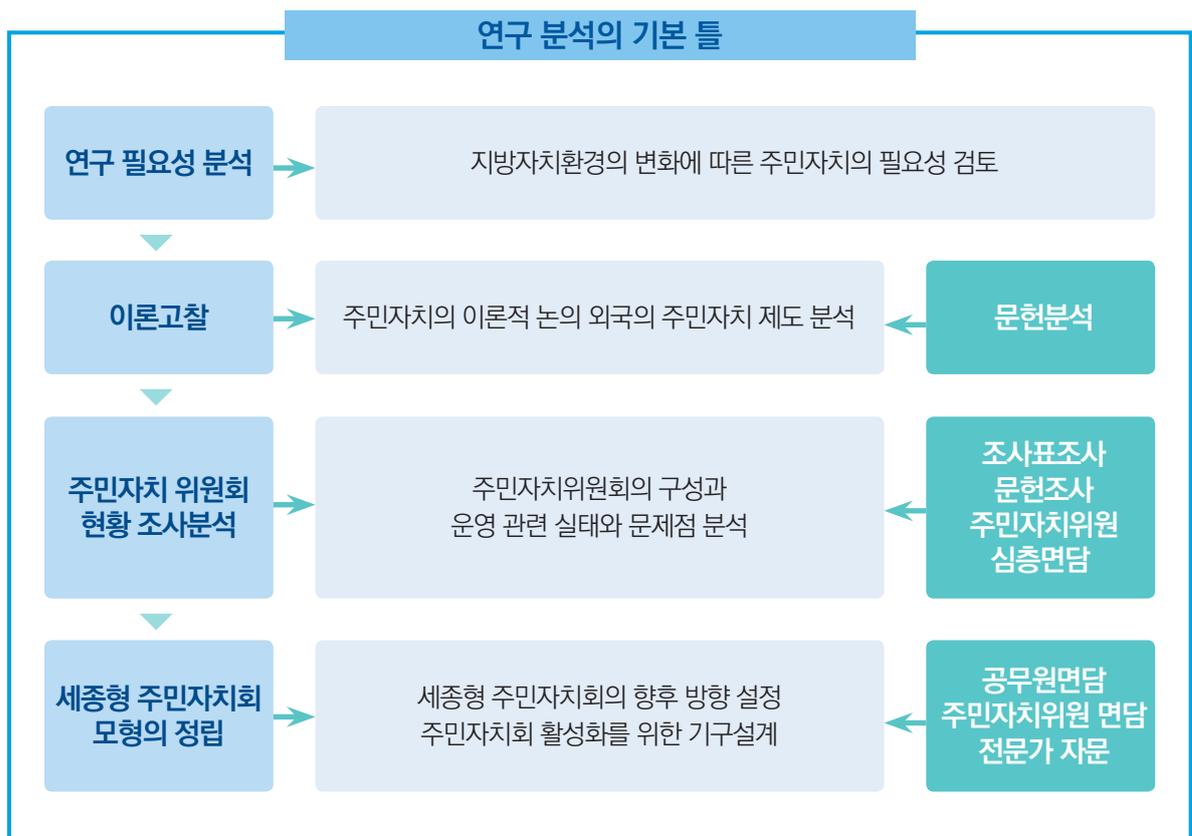
### ✓ 조사표 조사 및 심층면담조사

- 조사표 조사
  - 대상: 세종시 16개 주민자치(위원)회 중 아름동을 샘플로 지정 조사
  - 방법: 정형화된 조사표 활용
  - 내용: 주민자치회 법제화, 자치단체의 지원,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홍보,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

- 심층면담조사
  - 대상: 아름동 주민자치위원,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
  - 방법: 자문회의, 전문가 워크숍 개최

### 3 연구 분석의 기본 틀

-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 및 적정 분석방법의 활용
  - 전체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연구 분야별 적정한 연구방법을 활용함



## II. 주민자치 관련 이론적 논의

### 1 주민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회의 필요성

#### ✓ 주민자치의 개념

- 주민자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면이 가능한 근린지역을 단위로 하여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함
  - ‘근린’은 ‘가까운 이웃’이며, ‘근린 사회’는 ‘사람들이 가까이 이웃하여 서로 잘 알며 친숙하게 공동생활을 하는 지역 사회의 최소 단위’임
  - ‘근린(neighborhood)’은 ‘주거지 인접성에 기초를 두고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인 이웃과의 교류에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(area)’로 정의내릴 수 있음
-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인 ‘근린’과 유사한 개념이 ‘마을’과 ‘동네’임
  - ‘마을’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, 사람들이 주거와 농업에 적합한 장소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룩된 ‘삶의 터전(=자연부락)’이라고 할 수 있음
  - ‘동네’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행정구역을 의미함
- 주민자치는 ‘근린이라는 공간단위를 매개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성(autonomy)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생산 행위에 참여하는 것’으로 정의할 수 있음
  - 주민자치는 근린단위 통치조직으로서의 ‘정부(government)’가 아닌 ‘통치과정’으로서의 ‘거버넌스(governance)’라고 할 수 있음
  - 다양성·복잡성·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 문제를 정부나 시장과 같은 단일 행위자나 부문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 속에 등장한 개념이 ‘거버넌스’임
  -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, 주민조직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임

-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또는 관리적 권한이 근린단위의 주민에게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주체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
  -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차원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, 주민과의 상담(consultation), 숙의적 포럼(deliberative forum), 주민의 직접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

### ✔ 주민자치회의 필요성

- 근린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
  -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둠
  -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구심점이 됨
  - ‘참여민주주의’가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고, 이러한 참여민주주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정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음
- 지방자치의 중심축 변화에의 대응
  - 기관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변화되고 있음
  -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던 권한 중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린 생활기능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기결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주민자치회가 필요함
-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의한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
  - 읍·면·동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주민자치조직이 필요함
  -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근린자치지원기능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위원회의 근린자치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양자 간의 민관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함

-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의 구현
  -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 단위는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읍·면·동임
  - 읍·면·동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민 중심의 지역분권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함
  - 주민자치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
  -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복을 주민자치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실정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민 조직이 필요함

## 2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

### 1) 주민자치회의 도입 과정

#### ✓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

- 제18대 국회에서 『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』의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
  - 특별법의 제20조(설치)는 “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”고 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함
  - 특별법의 제21조(기능)는 주민화합 및 발전, 법령·조례·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으로 규정함
-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
  -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함

## ✔ 주민자치회의 모델개발 및 시범실시

-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용역
  -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용역을 거쳐서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기능, 읍·면·동 사무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협력형, 통합형, 주민조직형 등 3개 주민자치회 모델 도출
- 『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』 대신 2013년 『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』이 제정됨
  - 특별법 29조 제4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근거 마련(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)
-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 모델 확정
  - 3개 모델을 모두 시범실시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나, 지역주민과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협력형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델로 확정
-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 지역 확정
  - 1단계(2013.7.~2014.12.): 31개 읍·면·동을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(경기 5, 충남 4, 광주 3, 기타 19, 읍 4곳, 면 7곳, 동 20곳)
  - 2단계(2015.1.~2016.12.): 1단계 31개 읍·면·동은 2단계에도 계속 참여하고 추가로 18개 읍·면·동이 시범실시에 참여하여 총 49개 읍·면·동이 참여함

## 2)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(협력형)

### ✔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

-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보완·발전한 형태로 읍·면·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병렬적으로 설치됨
- 읍·면·동사무소는 존치하고 현행 기능을 수행
-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, 위탁사무 처리기능과 읍·면·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·심의기능 등을 수행

- 읍·면·동 행정 기능에 대한 협의·심의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선출방식을 변경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

### ✓ 설치단위

- 현행 제도와의 정책적 연계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운영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·면·동 단위로 1개의 주민자치회를 설치
  - 다만,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도록 함
  - 분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은 시·군·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고 조례로 규정

### ✓ 구성과 운영

- 성 격: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기구
- 위원의 정수: 20~30명의 범위 내 조례로 규정
- 위원의 선출 및 위촉
  - 자격요건: 당해 읍·면·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당해 읍·면·동 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단체 근무자
  - 선출방법: 위원선출 관리를 위해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단위로 9명 내외의 '위원 선정위원회'를 구성·운영(시·군·구별 조례로 결정)
  - 위원의 위촉: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
  - 지위 및 임기: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, 임기는 2년(연임 가능)
  - 임원, 분과위원회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
  - 회의 개최 시기, 요건, 의사결정 방식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
  -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총회 소집 또는 문서공람 방식 활용 가능
  -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음

## ☑ 주민자치회의 기능

### (1) 기능

- 읍·면·동 행정기능\*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\*\*에 대한 협의·심의 권한을 가지며, 읍·면·동사무소가 주민자치회의 협의·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

\* 읍면동 행정기능: 현행 읍·면·동사무소 사무

\*\* 지역개발, 생활 안전, 복지, 금전적 부담, 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예) 중장기 읍·면·동 발전계획 수립·집행·평가, 지역공동체 특성화사업·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수행, 주민자치센터 관리·운영, 마을 주민자치활동 운영·지원 등

- 주민자치기능\*, 위임·위탁사무 처리기능\*\*을 직접 수행

\* 주민자치기능: 특별법 §21② 제1호의 사무(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)

\*\* 위임·위탁사무처리기능: 특별법 §21② 제2호, 제3호의 사무(지방자치단체, 관계 법령, 조례, 규칙 등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)

### (2) 재정 및 감사

- 재원의 구성
  - 자체재원: 회비, 자체 수익사업·위탁사업 수입, 사용료 등
  - 의존재원: 사업보조금, 운영보조금
  - 기타재원: 주민 또는 기업의 기부금품 등
- 회계처리 및 감사 기준은 자체규정으로 마련

### (3) 교육훈련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상호 교류를 위해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법에 명시
  -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실시

### (4) 다른 기관과의 관계

-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
  - 주민자치회에 재정 및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, 기술 등을 지원

- 위탁사무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고 시군구청장이 회계감사를 실시
- 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
  -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·기능이 중첩되므로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권리·의무를 승계
  -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

### 3) 외국의 주민자치제도

#### ✓ 일본의 자치회

- 자치회는 그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단결하고,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임
- 자치회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지역 전체의 다양한 과제를 협동해서 해결해 가는 장소 및 주민 상호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지임
- 자치회는 지역의 복지, 환경, 방범, 방재 등 개별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, 지역주민 상호의 연대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자주적·민주적인 단체임

#### ✓ 영국의 패리시위원회

- 패리시(Parish) 내의 인구는 10여 명부터 약 7만 명 이상까지 있고, 그 활동내역과 규모도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움
- 패리시가 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가 어떤 서비스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선택하고 있음
- 패리시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시청 등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
  -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발, 폭주족에 대한 처벌의뢰, 전투기소음에 대한 진정, 버스노선 변경신청, 우체국사무에 관한 건의 및 요구 등의 업무

- 시 등 상급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 사업을 허가할 때 반드시 해당 패리시와 협의해야 함

✓ 미국의 커뮤니티협의회의 성격

-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비영리조직임
-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연계 관계를 갖지 않음
- 커뮤니티협의회 회원은 공식적인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, 무보수임
- 커뮤니티협의회는 교회, 학교, 도서관 등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함

[ 미국·일본·영국의 주민자치기구 비교 ]

국가	미국	일본	영국
명칭	Community Board	自治會	Parish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조직</li> <li>-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 법인체로 등록 (지방자치 단체가 설정한 구역과 조건 충족)</li> <li>- 뉴욕시 59개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일구역 거주민의 자치조직</li> <li>- 단체장 인가를 받은 법인격을 가진 「인가자연단체」</li> <li>- 임의단체로 규약 근거로 활동</li> <li>- 동경도 23 특별 구내 4,302개 설치 (103개 법인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대표기관</li> <li>- 설치방법: 주무장관 지시/기초자치단체신청/주민청원 (250명 이상)</li> <li>- 농촌·소도시 마을 단위 설치</li> <li>- 10,600여 개 설치</li> </ul>
법적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치헌장 제70장: 뉴욕시</li> <li>- 시의회 의결: 시애틀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자치법 제260조의 2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자치법</li> </ul>
구역 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역사적/지리적 공통성</li> <li>- 시의 행정서비스 제공권역: 경찰, 위생서비스 등</li> <li>- 인구 균등화: 평균 25만 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·중학교 학군 단위</li> <li>- 자치단체출장소/행정구 단위</li> <li>- 사회복지서비스권 단위</li> <li>- 기타 자치단체별 별도 기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구역단위로 설치</li> </ul>

국가 명칭	미국 Community Board	일본 自治會	영국 Parish
구성원	- 관할 구역 거주자, 사업장	- 세대 단위 회원제 - 관할구역 세대 자동 가입 - 타구역에서도 가입 가능 - 기업 등 단체회원도 가능	- 해당 행정구역 내 거주 주민
기능	- 행정과 주민의 연결: 주민요구전달, 시 사업 협조 - 자문: 지역계획수립 조언 - 예산 과정 참여 및 조언 - 자체 커뮤니티계획 추진	- 주민자치 기능: 복지/주민친목/환경/문화/회관운영/마을 만들기 - 행정보조 기능(사무위탁) - 축제 등 기타 수익사업 수행	- 생활 관련 시설 관리: 주차장(주류장)/도로(가로등), 목욕탕/세탁소, 공동묘지/화장장, 버스정류소, 체육/레크레이션장, 공원 - 공중위생: 공중화장실, 상하수도, 쓰레기 처리 - 토지관리: 시민채소농원, 공한지 - 주민자치사업: 문화예술, 축제, 주민친교모임, 음악회, 전시회 - 기타: 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, 사회복지사업
기관 구성	내부 조직 - 구성: 구청장이 무보수 명예직 위원 50명 지명 (투표권 있음) / 지방의원이 추천하는 자 / 해당 커뮤니티가 지역구인 지방의원 (투표권 없음) / 기타 전문가(투표권 없음) - 임원: 의장-위원 중 호선 부의장, 서기위원, 재무위원,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- 임기: 2년(1/2은 짝수년, 1/2는 홀수년) - 출석률이 낮은 위원 퇴출	- 임원: 회장, 부회장, 서기, 회계, 회계감사, 조장과 불록장, 전문부서장 - 무보수명예직(임기 2년) - 조장/불록장: 구역선거로 선출 - 임원: 주민 중에서 선출 - 전문부서: 총무/복지/환경/교통/문화/체육/방법/시설관리 - 사무국: 유급사무원 고용	- 유형: 패리시의회형 (회원수 150명 이상: 80%/주민총회형: 20%) - 의원수: 5명-20명 - 의원: 무보수명예직 (임기 4년), 주민 직선 - 중도 사퇴 시 후임자는 전임자가 추천

국가	미국	일본	영국
명칭	Community Board	自治會	Parish
기관 구성	회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기총회: 월 1회</li> <li>- 특별총회: 총위원 20% 이상</li> <li>- 긴급총회: 총위원 40% 이상</li> <li>- 소위원회: 수시 개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회: 정기총회(연 1회)</li> <li>- 임시총회 (회원1/3이상 요구)</li> <li>- 임원회: 필요시</li> <li>- 전문부서회: 월 1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기총회: 연 1회</li> <li>- 임시총회: 연 3회</li> <li>- 주민총회: 연 1회 이상</li> </ul>
	직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무국: 유급사무원 배치</li> <li>- 시가 조정관 (Facilitator) 파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무국: 주민자원봉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급 사무직원</li> </ul>
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주재원: 주민기부금</li> <li>- 시 지원금: 모든 활동재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주재원: 회비-세대당 월 300엔 기부금-축제시 개인과 기업</li> <li>- 보조금: 행정사무 위탁 수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주재원: 시설임대 수입, 사용료</li> <li>- 지원금: 패리시세(지방세 일부)</li> </ul>
행정과의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치현장을 제정하여 활동의 자율성 보장</li> <li>- 시에 시장 직속 업무지원팀이 설치됨</li> <li>- 시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</li> <li>- 행정사무 위탁 수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시는 의무적으로 협의</li> </ul>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도시의 주민대표성 강화</li> <li>- 행정업무 부담 완화</li> <li>- 주민자생조직(연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대별(임의) 가입</li> <li>- 민법상 법인</li> <li>- 임의단체(인가지연단체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패리시세를 통한 자치단체재원 이전 의무화</li> <li>- 주민의사대표</li> <li>- 서비스를 자율로 결정</li> <li>- 주민대의기관 구성</li> <li>- 주민청원으로 설치</li> <li>- 런던지역은 법으로 설치 금지</li> </ul>

### III.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

#### 1 조사설계

##### ✓ 조사의 목적

-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조사
  -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현황 조사
  -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진단
- 세종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과 역량 조사
  -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정도 조사
  - 주민자치위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
  -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
  -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진단
  -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참고 자료 도출

##### ✓ 조사 설계

- 조사표 조사
  - 대상: 아름동 행정복지센터
  - 주요 내용: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주민자치사업,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참여
  - 조사 방법: 표준화된 질문지에 자기 기입식 방식으로 조사
- 심층 면담 조사
  - 대상: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
  - 주요 내용: 주민자치의 의미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, 조직과 운영,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사업,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의 역할 분담
  - 조사 방법: 자유토론 방식

- 전문가 자문 조사
  - 대상: 주민자치 전문가, 현장 활동가
  - 주요 내용: 주민자치위원의 역할, 조직과 운영, 주요 사업,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의 역할 분담

## 2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분석 및 시사점

### 1) 실태분석 결과의 종합

#### ✓ 주민자치회 법제화

- 조례의 제정: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시행 2012.7.1.)  
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 중(2017.11.22. 공고 완료)
- 운영세칙/자체규약/회칙의 제정: 없음

#### ✓ 세종시의 지원

- 시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1명이 주민자치 지원업무 수행
  - 시의 경우, 전담은 아니고 주민자치 지원업무는 3개 업무 중 1개임
  - 아람동의 경우, 총무담당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1명이 주민 자치를 지원하고 있음
- 중간지원조직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

구분	지원조례명	전담조직명	전담공무원 수	중간지원조직명	임무	기타
세종시	세종특별 자치시	주민참여 담당	2		주민자치 센터 지원	
아람동	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총무 담당	1		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및 예산집행	

☑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홍보

■ 위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

- 세종시 주관의 워크숍 2회와 아람동 주관의 워크숍 3회 등이 있음
- 세종시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을 격월로 운영 중에 있음(연 6회 이상)
-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(1회, 호평동, 마장동)
- 세미나, 컨설팅, 설명회 등은 개최하지 않음

교육유형	주관	기간	횟수	참여자 수	내용	기타
워크숍	세종시	2017.5.19.	1	300	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	
		2017.10.25.	1	140	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	
	아람동	2016.(1회)	3	52	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	
		2017.(2회)				

■ 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

- 세종시 주관으로 통장교육을 1회 실시하고, 아람동 주관으로 주민 교육 2회 실시함
- 아람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강사교육을 3회 실시함
- 기타 직능단체,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은 없으나, 시의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임

교육유형	주관	기간	횟수	참여자 수	내용	기타
통리장	세종시	2016.	1	13	- 지방자치 박람회 참관 - 마을기업 사례 연찬 - 워크숍 참석	
강사	아람동 주민 자치위원회	2016.(2) 2017.(1)	3	60	-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청취 - 수강생 출결관리 철저 - 내실 있는 수업진행 방법	
주민	아람동	2016.	2	180	- 공동체 필요성과 발전 방향 - 재미있는 지역공동체 사례 - 세종시 아파트공동체 비전 및 활성화 방안	

-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홍보

-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동 게시판과 동 홈페이지, 현수막/플래카드 등을 활용하고 가구별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음
- 시 차원의 홍보는 리플릿(2회, 2,500매)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 시 홍보하고 있으며,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읍·면·동별 프로그램 개설, 수강생모집, 강사 인력 pool을 제공 중에 있음

- ✓ **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**

- 구성 시기 및 임기: 2015년 2월 구성 / 임기 2년
- 구성방법: 동장추천 및 공개모집
- 위원의 수
  - 조례상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, 현원은 19명임
- 자격 기준
  - 아름동 거주 또는 사업장 종사자
  -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
  -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
- 회장의 선출: 위원 호선
-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대한 주민 홍보: 현수막/플래카드, 동 홈페이지
  - 시 차원의 홍보나 지역신문 공고는 없었음
- 주민자치위원 경쟁률: 16명 지원에 11명 위촉(경쟁률 1.5:1)
  - 19명 현원 중 연임자 8명을 제외한 11명 신규 총원
- 주민자치위원의 직업

구분	농림어업	제조업	도소매업	음식업	금융보험	부동산	기타	무직	계
위원 수					1	1	14	3	19

- 위원 중 중간 사퇴자 수: 4명
  -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3명, 주소지 이전 1명임
- 분과위원회의 구성: 2개 분과가 구성됨

분과위원회명	구성시기	위원 수	임무	기타
프로그램분과	2017.4.14.	11	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문화행사	
사업분과	2017.4.14.	6	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발굴	

- 실무조직(사무국)의 구성
  - 독자적인 사무국 공간이 있으며 유급사무원도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음

사무원 수	채용 시기	기간	직업	급여	근무시간	임무	기타
1	2017.3.1.	1년	-	120만 원	10:00~17:00	주민자치위원회 일반사무	

-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음

☑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: 2016 ~ 2017

- 협의/심의사업
  - 2016: 주민자치센터 교류사업(노원구-아름동), 주민자치 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,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포럼개최
  - 2017: 어린이 숲체험교실, 청소년과 함께하는 맑은 아름다님 길, 주민과 함께하는 한아름나들이, 제3회 아름별가족축제 프로그램 기획
- 위탁사업 : 실적 없음

■ 주민자치사업

사업명	예산	착수일	주관	참여자 수	주요 내용	기타 (신규/지속)
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	국비	2016.1.	주민자치 위원회	925	-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운영	지속
	시비					
	자체					
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포럼	국비	2016. 11./12.	도시재생 지원센터, 아름동 주민자치 위원회	180	- (1차) 재미있는 아파트, 어떻게 만들까? - (2차) 아파트에서 함께 놀자!	신규
	시비					
	자체					
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	국비	2017.2.	주민자치위원회	677	-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운영	지속
	시비					
	자체					
한아름 나들이	국비	2017.6.	주민자치위원회	60	- 지역주민 친목 도모 및 소통 -가족 단위 둘레길 답사 등	신규
	시비					
	자체					
어린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	국비	2017. 7.	주민자치위원회	60	- 어린이 및 유아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	신규
	시비					
	자체					
맑은 아름다남 길	국비	2017. 7.~11.	주민자치위원회	150	-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지역 거리 청소 및 환경캠 페인	신규
	시비					
	자체					

☑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

-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: 시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구분	금액	관리책임	시기	예산세부내역	기타
시 지원	164,273천 원	담당공무원	2016.	-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- 주민자치 운영 인센티브 -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	
	137,881천 원	"	2017.	-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- 주민자치 운영 인센티브 -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	
자체수입	56,919천 원	위원회 간사	2016.	-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	
	44,695천 원	"	2017.	-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	

-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출

구분	금액	지출책임	시기	지출세부내역	기타
인건비	9,074,980	위원회 간사	2016.	총무급여 및 수당, 간사활동비 등	
	10,748,609	"	2017.	"	
사업비	133,810,660	담당공무원	2016.	프로그램발표회 및 지원 등	
	67,567,000	"	2017.	"	
운영비 (회의비)	5,140,000	"	2016.	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	
	2,540,000	"	2017.	"	
기타	16,640,250	"	2016.	사무용품구입, 제반 경비 등	
	110,900	"	2017.	"	
합계	245,632,399				

※ 2017년은 6월 30일까지 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
- 주민자치(위원)회의 회계 관리자
  - (시 지원 예산) 동 주민자치 담당공무원, (수강료 수입) 주민자치위원회 간사

### ☑ 주민참여/민관협력

-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통/리장, 직능단체 등임

구분	위원	강사	사업단	수강생	토론회	공정회	기타	합계
통리/반장					30	30		60
직능단체					15	25		40
학부모				1,000				1,000
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					22	20		42
일반주민	19	37		980	160	200		1,396

## 2)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

### ☑ 주민자치회 법제화

-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,
- 운영 규칙이 없어 현재 제정 중에 있음
- 주민자치위원회 내부 회칙에 해당하는 운영세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

### ☑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(위원)회 홍보

-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주민 홍보는 주로 동 게시판, 현수막, 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있음
- 세종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읍·면·동별 프로그램 개설, 수강생모집, 강사 인력 pool을 제공 중에 있음. 아울러 시에서는 리플릿(상·하반기 2회, 2,500매)을 제작하여 읍·면·동 배부 및 각종 시민 대상 회의 시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

### 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

- 아름동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공모 또는 추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음
- 조례에는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19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
-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있음
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경쟁률은 약 1.5:1로 나타남
  - 현원 19명을 기준으로 연임자 8명을 제외한 11명을 신규로 충원함
- 신규위원(11명)과 연임위원(8명)의 비율은 신규위원이 약간 많게 나타남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직업은 기타가 14명으로 가장 많음
  - 그다음으로 무직, 부동산, 금융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

#### ✓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대한 주민홍보 방법

-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대한 주민홍보 방법으로 현수막, 읍·면·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있음
- 아파트 단지별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나, 지역 언론 등의 활용은 미흡함

#### ✓ 실무조직(사무국)의 구성

-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음
  -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도 확보하고 있음
- 유급사무원을 총무로 1명을 채용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

#### ✓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

-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~3건의 심의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위탁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
- 주민자치사업은 주로 주민자치 강좌관리에 한정되어 있음
  - 주민자치위원은 프로그램관리를 주민자치위원의 주된 역할로 이해하고 있음(심층 면담 결과)
-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/심의사업과 위탁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

#### ✓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

- 주민자치위원회 2016.-2017. 6. 30.까지 수입은 총 403,768천 원임
  - 시 지원 예산은 302,154천 원이고, 자체 수입은 수강료 수입으로 101,614천 원임

- 주민자치위원회 2016.~2017. 6. 30.까지 지출은 총 245,632천 원임
  - 총무/간사 수당 및 활동비 19,823천 원, 프로그램 발표비 등 201,377천 원, 위원회 운영비 7,680천 원, 기타(사무용품구입, 제반 경비 등) 16,751천 원임
  -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, 프로그램을 제외한 주민자치사업비 등에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음
-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
  - 주민자치위원회의 2016.~2017. 6. 30.까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잔액은 158,136천 원으로 지출액은 전체 수입예산의 60%이며, 40%의 수입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남겨지고 있음
- 주민자치위원회 회계 관리자는 동의 주민자치담당 주무관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나누어 맡고 있음
  -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주무관의 주된 임무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일반 행정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 주민자치 지원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(공무원 면담 결과)
- 향후,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전문적인 회계관리 교육 등을 통해 점차 위원회 자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#### ✔ 협력하고 있는 사회단체

-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이 미흡함
  - 세종시 아름동에는 통리/반장, 직능단체, 종교단체, 봉사단체, 상인회, 학교, 학부모회,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회에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하고 있지만, 그중 일부 단체인 통리/반장과 직능단체만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음
- 지역 내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## IV.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정립방안

### 1 기본방향

- 주민자치의 방향성
  - 주민주권주의 개념 도입 및 제시
  - 상시 참여민주주의 구현
- 다양성
  - 지역의 특성 반영: 세종시형 모형 개발(도시형-동과 농촌형-면 구분)
  - 다양한 주민계층의 참여 기회 제공
- 주민 대표성
  -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 활동 인준
  - 다양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: 주민총회 활성화
- 실현 가능성
  - 지방자치단체의 행·재정 여건
  - 주민의 참여 의지, 관심도, 자치역량
- 목적타당성: 효과성
  - 지역공동체의 형성
  - 행정체제개편의 기반 구축
- 주민 편익성
  - 행정민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: 주민자치회의 위임 또는 위탁기능 활용
  - 행정과의 소통과 협력: 사전협의 기능 강화
- 주민 자치성
  -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
  - 주민참여의 강화

## 2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정립방안

### 1)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방안(협력형을 중심으로)

#### ✓ 설치단위

- 현행: 읍·면·동 단위로 1개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
  - 섬, 산간지역 등 인구가 적고 산재한 지역,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등에 분회 설치 가능
- 대안: 읍·면·동 이하 근린주거 단위인 통 혹은 리 단위로 설치
  - 도시형과 농촌형 구분(인구 기준)
  - 도시형은 통 단위, 농촌형은 리 단위로 주민자치회 설치

#### [ 외국의 주민자치 구역의 규모 기준 ]

규모	정체성(identity)	주민 수	특징
1	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(예:거리/블록) (Small group of dwellings)	500 미만	- 이웃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형성된 정감과 호혜, 친 사회적 행동 등으로 특징지어짐 - 상호작용은 공식적 조정이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음 - 근린의 형태이지만 다른 영역에서 근린을 대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
2	이름이 붙여진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 (Smallest named settlement)	500 ~ 3,000	- 이 규모의 중요한 속성은 정체성(identity)으로서 이웃들 사이의 관계가 집단, 지위, 계급, 인종, 연령 등과 관련된 정체성을 통해서 매개됨 - 지역사회결사체, 근린주거조직, 소규모 스포츠 동우회와 같은 조직화 동인이 작동함 - 근린을 대표하는 조직을 가질 규모가 되며,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'자율거버넌스(self-governance)'가 가능함 - 근린조직이 다른 근린이나 더 높은 규모에서 해당 근린을 대표할 수 있음

규모	정체성(identity)	주민 수	특징
3	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 (Smallest governed settlement) 한국의 읍·면·동 수준	3,000 ~ 15,000/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가 이 규모에서 학교, 치안, 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제도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</li> <li>- 영국의 패리시, 미국의 타운의회, 프랑스의 코뮌 등 지방정부의 최일선 행정계층의 형태</li> <li>- 선출직 공직자들이 근린 형성을 지배하는 '계층적(hierarchical) 거버넌스'의 성격</li> <li>- 많은 주민조직들이 이 단위에서 활동하지만 전체 근린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</li> <li>- 최근 이 규모에서 정부와 비정부조직 사이의 파트너십에 관여하는 주민조직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</li> </ul>
4	지속 가능한 최소단위의 거주지 (Smallest sustainable settlement)	20,000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장, 대학교, 프로스포츠 등의 요소가 가미되며, 근린이라기보다는 도시적 성격</li> <li>-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며, 세계화에 따른 도시 간 경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</li> </ul>

※ 자료: Somerville(2011: 90)

- 개선안: 읍·면·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, 근린주거 단위인 통(대도시 지역은 아파트 단위) 또는 리 단위에 분회 설치
  -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준수(특별법 제27조)
  - 읍·면지역의 리는 구역은 넓지만 인구가 적어서 주민자치회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하지만, 이장 중심의 리 단위 자치가 한국의 전통적인 주민자치의 모습임
  - 현재 통이나 리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통장이나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거점 조직이므로 행정조직인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의 현장 거점조직인 분회가 타당함

**※ 통 또는 리 단위에 분회를 설치하는 경우**

통 또는 리의 주민자치분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집행기관이 되고  
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

## ✓ 구성

### (1) 주민총회(신설)

- 필요성
  - 주민의 대표성 확보
    - 주민의 관심 유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
- 성격: 주민 전체 회의, 주민 대표기구,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
- 구성
  - 해당 읍·면·동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(가구당 1명)
  - 해당 읍·면·동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(업체당 1명)
  - 출향인사(해당 지역 출신으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주민총회 회원의 자격으로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)
- 설치근거
  - 시·군·구 설치 조례 혹은 규칙

#### ※ 주민총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
혹은 '주민자치헌법(일본의 경우)' 등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

- 의장: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총회의 의장이 됨
  -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직접 투표로 의장을 선출할 수 있음
- 회의
  - 정기회의: 연 1회 개최(12월 전후)
  - 임시회의: 주민자치회의 요구,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
  - 온라인 토론폰방: 마을의 현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방 개설 및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언 취합
  - 온라인 투표 활성화: 지방자치단체의 시책, 마을의 현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찬반 등의 투표 실시

- 회의 성립 출석수, 의결정족수 등은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음(필요한 경우,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회칙으로 정함)

#### ■ 기능

- 주민자치회의의 1년간 활동성과 보고
- 주민아이디어, 주민 건의사항 취합
- 주민화합과 교류 및 소통의 마을 잔치
- 상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

#### ※ 독일의 경우

주민총회의 결정을 지방의회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안에 반영하여야 함

#### ※ 미국의 경우

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은 반드시 '주민총회의 의결'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함(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역 개발계획 등은 무효로 처리하거나 반려시킴)

## (2) 주민자치위원회

- 성격: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기구
- 위원의 정수
  - 20~50명의 범위 내 조례로 규정. 다만, 인구규모가 적은 면 지역의 경우 20명 이하로도 구성 가능
    - 읍·면·동별로 인구편차가 심하나,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상·하한선을 제시
    - 현재 통·리·반은 인구, 면적, 지리적 조건 및 역사적 전통과 문화계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을 감안하고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의 평균 통·리 수(24개)에 기초하여 규모를 결정
  - 아람동의 경우, 조례는 3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, 19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음 희망자가 다수 있으므로 25명 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

※ 서울시의 경우, 서울형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정수는 35명~50명으로 정함

※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 읍·면·동의 여건에 따라서 각각의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① 인구 규모 고려
- ② 읍면동 산하 통과 리수 고려

■ **위원의 선출 및 위촉**

- 자격요건

- 출향인사 포함 고려 - 농어촌의 경우, 부족한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세력 확보,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고양, 향후 귀향 혹은 귀촌 유도
- 관내 기업의 단체회원으로 참여 고려 -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분위기 조성(기업에 우호적인 지역 사회,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)

- 선출방법

- 위원선출 관리를 위해 세종시 또는 읍·면·동 단위로 9명 내외의 '위원선정위원회'를 구성·운영 (세종시의 조례로 결정)
  - ① 1안: 세종시 단위 설치
  - ② 2안: 읍·면·동 단위 설치

※ 주민자치회 49개 시범 실시 읍·면·동 조사표 조사 결과

- ① 대부분의 선정위원은 읍·면·동장이 추천하고 있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도 읍·면·동장의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② 표준조례에는 위촉권자는 시·군·구청장이지만, 시·군·구청장이 위촉 권한을 읍·면·동장에 위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읍·면·동장에게 권한이 있음  
⇒ 읍·면·동장이 위원선정위원의 위촉권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임

- 선출방식(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)

- (지역대표) 주민총회 또는 통·리·장 호선방식 중 선택
  - ① (주민총회 선출방식) 위원선정위원회의 주관으로 읍·면·동 주민총회에서 선출
  - ② 통·리·장 호선 방식
    - ㉠ 도시형: 통장 중 호선 또는 순번제로 선출

- 통장: 반장 중 호선
- 반장: 주민총회 등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
- ⑥ 농어촌형: 이장 중 호선 또는 순번제로 선출
  - 이장: 주민 직선 등으로 선출
- ② (일반 주민 공개모집) 공개모집 후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
- ③ (직능대표 선출) 전문가, 직능단체 대표 등을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
  -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차로 위원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주민이 직접 심사하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 가능
- ④ (예비후보 선정) 공석 발생을 대비하여 공개모집 된 후보 중 5인 이하의 예비후보 선정
  - 지역대표의 경우 결원 발생 시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지역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하여 재선출

## ☑ 주민자치회의 운영

### (1) 기능

- 자치사업 기능
  - 위임·위탁기능의 범위와 한계

#### ※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

- ① “위임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
- ② “위탁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
- ③ “민간위탁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
  - ⇒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위임 또는 위탁의 범위와 한계가 결정됨

## - 위임기능 수행 가능성

### •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

-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(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,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)에 따라서 사무를 위임받으려면 주민자치회가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이 되어야 함
- ②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원 신분(준공무원, 명예직 정무공무원, 계약직 공무원)이 되어야 위임사무 수행이 가능함

### •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

- ①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에 대하여 공무원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
- ② 공문처리나 계획서 기획 등 행정사무처리능력,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과 관련된 회계사무 처리능력이 필요함
- ③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직 유급사무요원이 필요함

### ※ 주민자치회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

- ① 주민자치회를 시·군·구 하부행정기구로 하는 경우
  - 주민 대표의 자치기구가 아닌 행정보조기구로 주민자치의 기본에 맞지 않음
- ② 주민자치위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경우
  - 시·군·구청장 혹은 읍·면·동장을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자치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움.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
  - ⇒ 이상의 제약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위임사무의 수행은 한계가 있고, 위탁사무(민간위탁) 위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

## - 위탁기능 수행방안

### • 아름동의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수행 가능성

- ① 현재 1명의 주무관이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- ② 담당 공무원이 업무의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어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(공무원의 업무량 경감,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 확대)

※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

- ③ “민간위탁”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

[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위탁 가능한 시설 ]

구분	시설명	시설개요
1층	북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운영방식) 제한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(장애인)</li> <li>· (면적 및 임대료) 16.7㎡ / 연 3,960,000원(월 33만 원)</li> <li>· (영업내용) 커피, 음료, 제과, 제빵 판매</li> </ul>
	어린이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개원시기) 2014. 12. 1. (공립아름나무 어린이집)</li> <li>· (아동현황) 9학급 100여 명</li> <li>· (직원현황) 13명(원장, 원감, 주임, 교사, 누리교사, 조리사)</li> </ul>
2층	드림스타트센터 (여성가족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사업대상) 0세~만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</li> <li>· (사업내용) 신체, 언어, 행동 발달 맞춤 프로그램 운영</li> </ul>
	어르신 여가시설 (노인보건장애인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시설현황) 여가 활용실 1, 알파룸 1 / 370㎡</li> <li>· (이용현황) 이용 인원 월 388명(회원 127명)</li> <li>· (프로그램) 스트레칭, 탁구교실, 노래교실, 라인댄스</li> </ul>
3층	문화의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운영현황) 38개 강좌 60개반 1,500여 명</li> <li>· (주요강좌) 어학, 미술, 음악, 교양, 체육 등</li> <li>· (내 용) 주민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강좌운영</li> </ul>
	다목적강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운영현황) 각종 문화공연, 강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</li> <li>· (객석규모) 418석</li> <li>· (부대시설) 음향조정실, 빔프로젝터, 분장실, 대기실 등</li> </ul>
4층	도서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장서현황) 19,086권(일반도서 46%, 어린이도서 54%)</li> <li>· (이용현황) 1일 평균 318명 이용(어린이 비율 약 41%)</li> <li>· (개관일) 월~금요일(09~22시) / 일요일(09~18시)</li> </ul>
기타	스포츠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프로그램: 수영, 헬스, 에어로빅, 요가, 스피닝 등</li> <li>· 운영: (주)코오롱스포츠렉스 위탁 운영</li> </ul>

- 주민자치 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
  - 읍·동지역과 면 지역을 차별화하여야 함
  -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(행안부의 혁신 읍·면·동 추진계획 참고)
  - 행정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
    - ① 행정이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일
    - ② 조례 등에 명시
  - 주민이 원하는 일
    - ① 보충성의 원칙 적용(주민이 우선 선택하고 행정이 지원)
    - ②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
  - 행정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기획하고 자원과 인력을 부담
- 협의협력 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
  - 민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
  - 읍·면·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분담
  - 공무원이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음
- 주민교육기능
  - 민주시민 교육
    - 기초생활질서 지키기
    - 참여를 통한 권리 누리기
  - 문화시민교육
    - 인문학
    - 문화예술소양

## (2) 재정 및 감사

- 회계책임자
  - 주민자치회장: 간사에게 권한 위임

- 회계전문가를 간사로 채용: 유급사무원
- 감사권자: 시장

### (3) 주민자치위원의 교육

- 유형: 입문교육, 전문교육, 보수교육
- 교육 주체
  - 주민자치위원회: 읍·면·동주민자치위원회, 시·군·구주민자치연합회, 시·도협의회
  - 지방자치단체: 읍·면·동, 시·군·구, 시·도
- 교육내용
  - 주민자치 실무교육: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것
  - 지역사회 리더십교육: 마을의 어른, 주민의 대표, 포용과 협치

#### ※ 주민자치학교

- ① 주민자치 입문과정: 일반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지망자 대상
- ② 주민자치 초급과정: 신임 주민자치위원 대상
- ③ 주민자치 중견과정: 회장, 간사, 분과위원장 등 대상

#### ※ 시범 실시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(성동구):

##### 주민자치학교 이수자만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음

⇒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난 다음의 교육이 더 중요함. 일반주민 대상 주민자치위원 입문 교육은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움

### (4) 하부조직 및 연합조직 구성

- 하부조직으로 통·리 단위 주민총회 설치
  - 필요 시 통·리 단위로도 주민총회를 구성할 수 있음
  -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·면·동 단위 주민총회 자체 규정을 준용하며,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제정

- 연합조직으로 주민자치회 연합회 설치
  - 법령상 시·군·구/시·도 단위의 임의단체로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설치
  - 지방자치단체와 힘의 균형을 이루고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, 지방의회의 견제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함

## 2) 주민자치회 수행사업 및 기능의 적정화 방안

### ✓ 기본 전제

-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
  -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주민참여 시스템의 토양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자치공동체의 책임 역량 함양
  - 국가 사무로서의 사회복지 사무가 늘어나면 날수록 지방재정을 잠식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재정적 여력은 취약하게 되고 지방은 중앙 종속적이 됨
- 지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보다는 지방의 자체예산 확보가 중요
  - 국가에서 높은 조건의 보조율을 제시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면, 비록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시설이 복지시설이라고 할지라도, 단체장은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인 사회복지시설보다 국고보조 사업인 체육시설을 선택하게 됨
  - 국고보조 사업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남
-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의 축소 및 폐지
  - 중앙정부의 지침은 주민들의 다양한 주장이나 요구를 무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움
  - 중앙정부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소신과 역량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나 주장을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원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역량의 개발이나 향상을 저해함
  -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, 구속력을 발휘함 (중앙정부의 사무감사를 받을 때, 이러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)

- 자주적 조직편성권도 명목상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는 듯하지만,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직이나 인건비의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음
-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치권이나 기채권의 강화
  -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선 국고보조 사업을 획득하는 것임
  -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신규 사업이나 기획 사업에 치중하게 만들고,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획 사업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임
  - 세입의 자치권이 없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

## ☑ 읍·면·동과 주민자치회 간 기능 배분의 원칙과 기준

### (1) 기능 배분의 기본 원칙

- 공공성 및 경제성·효율성 측면
  - 상대적으로 행정 고유의 공공성이 높으면 읍·면·동에서 수행하고,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이 높으면 주민자치회 처리
- 지역공동체 형성 측면
  - 주민참여 필요성이 낮으면 읍·면·동이 수행, 지역 문제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지역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으면 주민자치회 처리
- 지역적 특성 및 현장성 측면
  - 지역적 특성 및 현장성이 낮으면 읍·면·동이 수행, 높으면 주민자치회 처리
- 사무처리의 전국적 연계성 및 통일성 측면
  -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처리되는 사무는 읍·면·동이 수행, 필요성이 낮으면 주민자치회 처리

## (2) 기능 배분의 기준

- 주민자치회의 기능배분 기준
  - 주민자치 사무: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 사무
  - 위임 사무: 행정기관사무 중 공공적 성격이 낮은 사무
  - 위탁 사무: 민간 인력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사무
  - 협의 사무: 주민과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무
- 읍·면·동과 주민자치회 간 사무배분 기준(예시)
  - 행정기관(읍·면·동 등)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
  -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
    - (협의 사무)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 조정, 지역개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행정과 주민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 사무 등
    - (위임 사무) 공무원의 업무량 경감,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, 읍·면·동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 처리 사무 등
    - (위탁 사무) 지역사회단체의 역량 활용, 공익성보다 능률성 요구,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 등의 관리 운영 등
    - (주민자치 사무) 개별 읍면동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고, 다수의 주민 참여가 가능하며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무 등

## 3)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 등과의 관계정립방안

### ☑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간 관계재정립방안

- 심층 면담조사 결과
  -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
  - 주민자치위원, 공무원, 전문가 모두 동일하게 응답함
- 상호 보완관계 형성
  - 읍·면·동 사무소가 존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기구로서 읍·면·동장과 상호 대등한

입장에서 행정업무와 주민자치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함

- 상호 대등한 관계이지만, 공문처리, 회계처리 등은 공무원이 지원하고,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사업의 결정 권한과 집행 권한은 민간위원에게 부여함

#### ■ 견제와 균형관계 형성

- 읍·면·동장은 근린 지역사회의 생활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는 읍·면·동장이 주어진 권한을 주민을 위하여 정당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
- 주민자치회는 읍·면·동장이 현장의 문제점이나 사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 행정에 협력하여야 함

#### ※ <참고>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관계

##### 미국(커뮤니티 보드-뉴욕시)

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재정지원에 치중함. 지방정부의 행재정 지원(커뮤니티협의회 간 경계설정, 커뮤니티협의회의 창립 지원, 회의 장소 제공, 단체 간의 분쟁과 갈등조정 및 중재, 회의운영지원,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보조금 집행 지원 등)

##### 영국(패리시 위원회)

기초자치단체(District)의 경우에는 디스트릭트 의회와 패리시 의회 간 업무협력에 관한 현장을 맺음. 이 현장은 협력관계, 상담, 정보제공, 표준위원회, 지역공동체 활동, 재정 조정, 서비스 제공 권한위임, 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

##### 프랑스(지구평의회-시르지에시)

시장의 관할 코뮌 담당 비서관이 지구평의회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

##### 싱가포르(사회개발협의회)

중앙의 사회개발스포츠성 산하 인민협회에서 커뮤니티 행정을 담당. 지역별로 사회개발과를 두고 사회개발협의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

##### 중국(거민위원회)

성이나 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기구의 역할 수행

##### 일본(자치회, 정내회)

①자연형의 「지역 커뮤니티」 ②방법·방화·방재·위생 등의 행정 협력 조직이나 농가 조합이나 지역 상점가와 같은 직업 조직 등의 「기능에 의한 커뮤니티」 ③취미·교양·체육·복지의 씨클이나 그룹, 특정의 테마를 달고 마을 만들기를 전개하는 조직 등의 「활동 목적에 의한 커뮤니티」등으로 구분되며, ②의 유형이 가장 많으며,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

### ☑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관계재정립방안

- 견제와 균형관계 형성
  -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책임지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단체장의 견제하고 감시하는 견제기능을 수행함
  - 주민자치회는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대등한 권한과 기능을 가질 수는 없지만, 지방의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
-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형성
  - 지방의회는 조례 등 입법 관련 사항, 행정감사 등의 결과 등과 같은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제공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협조를 구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
  -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장의 문제점이나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방의회에 전달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자치회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행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

### ☑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의 관계 정립방안

- 주민자치회는 시·군·구 등 행정기관과 지역사회단체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성격을 가져야 함
  -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다른 지역사회 단체의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
  -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단체 대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·연구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함
  - 공무원 조직을 사무기구로 활용하거나 사무기구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,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단체의 지원업무는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

### ☑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및 참여방안

- 특별법,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,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 조례 등에 주민과 회원 등에 관한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
- 주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주민자치회 회원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야 함 (국민주권의 개념과 동일함)
- 주민은 자동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어야 함

## I 참고문헌 I

- 권자경(2016).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강화방안, 한국지방자치학회, <한국지방자치학회보>, 제28권 제2호
- 김병국 · 최철호(2012). 지방자치와 주민주권;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. 방안: 시론적 연구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<지방행정연구>
- 김순은(2012). 지방자치와 주민주권;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<지방행정연구>
- 김필두(2014).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분석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<지방행정연구>
- 김필두/류영아(2014).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, 한국거버넌스학회, <한국거버넌스학회보>
- 김찬동(2014).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<지방행정연구>
- 김찬동(2017). 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소고, 한국재정정책학회, 2017년 하계학술대회
- 이병렬/이종수(2015).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, 한국자치행정학보1.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
- 이정석(2015).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「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」의 도입 및 활용 방안, 한국지방정부학회, <지방정부연구>
- 지방자치발전위원회(2014).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
- 지방자치발전위원회(2015).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
- Somerville, P. (2011). Multiscalarity and Neighbourhood Governance.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, 26(10): 81-105.

정책이슈리포트

